

「평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심 사 보 고 서
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「평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2. 4. 13(금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12. 4. 19(목)
- 다. 상정일자 : 2012. 4. 26(목)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보건사업과장)

- 보건진료원의 신분전환(별정직⇒일반직)으로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「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」이 폐지됨에 따라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- 운영협의회 정관 개정(안 제3조)
- 운영협의회의 기능 및 기구, 임원을 두는 사항을 규정
(안 제4조~제6조)
- 운영협의회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7조)
- 운영협의회 위원 수당지급 규정 신설(안 제8조)
- 운영협의회 사무장 및 업무수탁 관련 조항 삭제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「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」이 폐지되면서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려는 전부개정 조례안임.

- 주요 내용을 보면
 -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와 정관에 대한 사항과
 - 운영협의회의 기능 및 기구, 임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.

- 본 조례안은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1조에서 위임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